「대학원 장학금 지급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3. 11. 27. 개정 판 (시행 2024. 3. 1.) → 2023. 2. 13. 개정 판 (시행 2023. 3. 1.)

바뀜 1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https://suleap.syu.my/r/229/compare?from=1478&to=1420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4:18:24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교내 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) ① 본 대학원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[별표1]과 같다. 〈개정 2018-02-28〉 ② 연구조교장학금,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20-04-06〉 ③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등록금 전액을 납부한 재학생에게 수여한다. 단,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(재단 등)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금의 경우 예외로 지급할 수 있다. 〈신설 2022-03-07〉 ④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. 〈신설 2022-03-07〉 ⑤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(단,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) 〈신설 2022-03-07〉 ⑥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한다.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. 〈신설 2022-03-07〉	**제8조(교내 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)** ① 본 대학원 학업을 지원하기 위한 교내 장학금의 종류, 지급기준 및 지급내용은 [별표1]과 같다. 〈개정 2018-02-28〉 ② 연구조교장학금, 수업지원조교장학금 지급내용은 별도의 운영지침으로 정한다. 〈개정 2020-04-06〉 ③ 모든 장학금은 반드시 정규 등록한 재학생이어야 한다. 단, 교외장학금의 경우 기탁자(재단 등)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근로장학의 경우 초과 학기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. 〈신설 2022-03-07〉 ④ 타 장학금과 중복수혜의 경우 국가장학금과 교외장학금을 우선 지급한다. 〈신설 2022-03-07〉 ⑤ 장학금의 지급 총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 (단,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.) 〈신설 2022-03-07〉 ⑥ 직전학기 성적기준이 있는 장학금의 경우 첫째 학기는 성적 관계없이 지급한다. 직전학기 성적이 없는 재학생의 경우 그 전 학기 성적으로 한다. 〈신설 2022-03-07〉